

안전인증업무범위 변경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
신고인	기관명	사업자등록번호	
		전화번호	
	대표자 성명	팩스번호	
	주소		
업무범위 변경사항			

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 업무범위가 변경(추가)되었음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

첨부서류	1. 사업계획서 1부 2.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시험검사 설비(시험검사 설비의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한 환경조건을 포함) 및 안전인증 인력 보유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. 안전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·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